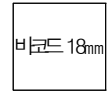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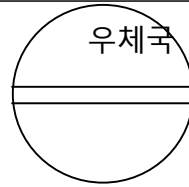
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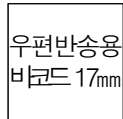
보내는 사람



음성변환용(외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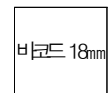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받는 사람



우편반송용

과 세 근 거



음성변환용(내부)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납부지연가산세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

시·군 (수납은행 확인용)

시·군	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(분)(납세자용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납세자:

기관번호	세목
------	----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	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읍면동	과세번호	검
------	------	---	----	----	----	----	---	----	-----	------	---
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-------	------

납세자 주소

납세자번호:

지 방 세

전자납부번호

과세대상:

수납용 바코드

납기 내:	
-------	--

세 목	납기 내 금액	납기 후 금액	부과내역(과세표준)	세율
합 계				

수납용
납기 내
까지

합 계

납기 후
까지

납기 후: 까지
납기 후 금액

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년 월 일 년 월 일

담당자: 문의처: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수납은행용 바코드
수납용

직인

지방자치단체의 장

직인

수납인

전자납부번호

유의사항

1. 지방세액 산출근거

과세근거	▪ 「지방세법」 제23조제2호, 제24조제2호 및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
납세의무자	▪ 「지방세법」 제24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는 자(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)
납부지연가산세	▪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 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(50일 이내)이 고지되며,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.

3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(시·군세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, 시·도세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)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유의사항

1. 지방세액 산출근거

과세근거	▪ 「지방세법」 제23조제2호, 제24조제2호 및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
납세의무자	▪ 「지방세법」 제24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는 자(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)
납부지연가산세	▪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 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(50일 이내)이 고지되며,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.

3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(시·군세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, 시·도세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)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